

韓·中·日간 어업관계의 역사적 고찰과 오늘의 意味

미래의 어업정책방향은 과거와는 달리 상호공존시대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히 어업부문에 있어
상호경쟁은 상호 공멸(共滅)의 길이라는 것이
세계 어업자원관리의 역사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일본에 의해 제기된 200해리 경제수역문제는 일방에 의한 것이 아닌,
상호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200해리 경제수역이 선포되더라도 상호 수역에 대한
입어문제, 어업자원관리문제 등 당사국 간에는 여전히 협력적 상황이 요구되는 것이다.

옥 영 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중·일간의 어업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기 위해서는 근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기록에 의한 한일간 어업관계는 조선시대 초기, 일본 어업자들이 왜구의 형태로 우리 연안에 몰려들어 오면서부터 그 시원(始原)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왜구가 극성을 부렸지만, 어업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대신 조선시대의 왜구는 어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고 알려지고 있다.

즉 당시의 왜구는 직업적인 도둑이라기보다는 서일본에 근거를 둔 일단의 어업자들이 우리 나라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육지에 상륙하여 노략질을 하였다고 왕조실록 등에 자주 기록되고 있다. 조선 중기의 한일간 어업관계는 삼포왜란 때까지 삼포, 즉 부산포, 내이포, 염포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근세 이전부터 일본인은 우리 나라 연안에 몰려와 활발하게 어업을 영위 하였던 것 같다.

본격적으로 일본이 어업침략을 한 것은 조선후기부터이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인의 어업침략이 성행하였던 곳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이었는데, 이후 일본은 우리 나라 연안에 대해 어업침략을 도별로 순차화시켜 나갔다.

이것을 그들은 通漁한다고

하였다. 즉 1883년에는 전라, 경상, 강원, 함경도, 연안에 대해 통어허가를 최초로 얻었으며, 1888년에는 인천지역, 1900년에는 경기도로 통어허가를 확대해 나가다가 마침내 1904년에는 나머지 충청, 황해, 평안도 연안에 대해서도 개방을 요구, 관철시킴으로써 전국 연안에 대한 통어허가를 얻게 되었다.

이는 한일합방에 앞서 어업 부문에서 먼저 침략이 시작된 것으로서 한일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어업부문에 대한 침략이 먼저 시작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시 우리 나라 주변의 어업자원이 대단히 풍부하였던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한 예를 들면 도미어업에 있어 '보통 한번 그물을 칠 때 3만 마리 이상이 포획되었으며, 너무 많이 어획되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하고 있다.

도미는 예나 지금이나 일본인들이 최고로 치는 어종으로서 일본이 우리 나라 어장을 탐내지 않을 수 없는 예가 되고 있다. 또 동해의 고래자원을 묘사한 것으로서는 당시

러시아의 황태자가 일본을 방문하러 동해를 향해하던 중 고래 떼를 만났는데, 고래 떼가 항로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고래 떼가 항로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고래 떼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느라 만나질이 소요되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이후 러시아는 동해의 고래를 잡기 위해 일본과 포경회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고래잡이에 나섰는데 이는 훗날 일본 원양어업 발전의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이 풍부한 어업자원에 영향을 받아 1890년대 부산항에 통어신청을 한 일본어선이 매년 600~700척에 이르렀으며, 정식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업하는 어선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천 척에 이를 것이다.

한편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어업관계도 중국에 의한 침탈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주변에 대한 어업 침탈은 사실 일본에 앞서 중국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다. 즉 1882년 중국과 우리 나라 사이에 체결된 商民水陸貿易章程에서 중국은 우리 나라에서의 조업권을 획득하였는데,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한국이 상호 조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 나라 어업 세력으로서 중국연안으로의 조업은 생각도 못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장정은 우리 나라에 대한 중국의 어업침탈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서해에서 조업했던 중국어선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는 총 3천여 척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는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서, 남해에서의 어업주도권을 독점하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동해에서의 어업주도권을 독점하게 되자 본격적인 어업침략을 감행하게 되었다.

1900년대 초부터 1920년대까지 일본에 의한 어업침략은 어업이주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즉 종래 통어형태로 이루어지던 어업진출은 일본인들의 해외 식민지 이주정책에 따라 현지에 상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지 상주형태는 집단적인 촌락을 구성하여 어업을 영위하였는데, 이것을 이주어촌이라고 하였다.

이주어촌은 우리 나라 연안에서의 어업침략을 용이하게 하는 점도 있었지만, 일본내

어촌에서의 과잉인구를 해소하는 방편도 되었다.

이 결과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인의 어업진출은 크게 늘어나 식민지 초기인 191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의 일본인에 의한 어구규모가 우리 나라 전체 어업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20년대에 이미 우리 나라 전체 어구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진출이 활발하였다.

해방 이후의 한일어업관계도 여전히 일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과는 청일전쟁이래 단절되었던 어업관계가 해방 이후도 이태올로기 대립으로 계속 통제되었지만, 일본은 2차대전 후 부족한 국내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여전히 어업침범을 일삼게 되었다.

그 결과 평화선이 선포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64년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이것은 평등관계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즉 한일어업협정은 1952년 제1차 회담 이후 1964년까지 7차례의 공식회담을 거치는 등, 협상 줄다리기 과정에서 실무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의 한일회담 조기타결 조치로 인해 일본측에 매우 유리하게 체결되었

다. 즉 오늘날 적용되고 있는 12해리 어업전관구역, 기국주의 등은 일본의 입장이 전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더 큰 문제로서는 협정체결 이후 일본의 협정준수 여부였다.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자국의 관할권으로 하자는 일본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본이 위반을 하더라도 적절한 규제를 하기 힘들었다. 그 결과 협정체결 이후 우리 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일본인의 조업은 협정체결 이전인 평화선 시대보다 더욱 활발하여졌다.

한 기록에 의하면 연평도 근해에서만 630척, 제주도 근해에서만 4,200척의 일본어선이 조업하였다고 한다. 이는 당시 같은 해역에서 조업했던 우리 나라 어선이 1,300척에 불과하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는 한일간의 어업관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어업세력은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의 과잉조업경쟁은 자연히 일본측 해역으로의 진출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불법어선은 물론이거니와

허가어선까지 일본측 해역에서의 조업이 늘어나서 일본 연안어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반전은 북해도에서의 트롤, 봉수망어업 등이 조업하게 되면서 피크를 보이게 되었으며, 급기야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최근까지 주장되었다.

1980년대의 어업상황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 동안 적대관계에 있던 한중간의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중국어선이 우리 근해로 대거 진출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내어민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한중간의 어업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정부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 나라 근해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4,000여 척을 상회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자원감소, 인력부족 등으로 연근해어업의 조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 어선의 어업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중어업협정이 모색되기 시작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였다.

이와 같은 와중에서 일본에 의한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문제가 제기되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한다. 역사학자 E.H. 카이는 역사란 자연과학처럼 절대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역사의 의미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인식하고,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조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해역에 대한 어업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한중일간의 과거 어업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삼국의 상호협력보다는 한 쪽이 강성할 때마다 서로 침범을 하던 관계로 압축할 수 있다.

긴 기간을 통해 볼 때 주로 우리가 침탈대상이 되어 왔지만, 최근 일본의 생각은 197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어업에 의한 자국의 어업자원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해리 경제수역문제가 일본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 나라 주변수역의 어업

자원이 급속하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어업자원감소가 연근해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업자원관리 정책은 수산정책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입장에서 자원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는 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우리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다만 그것이 과거의 사실은 덮어둔 채 일방에 의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면 백년전 제국주의 논리에 의해 침탈을 일삼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미래의 어업정책방향은 과거와는 달리 상호공존시대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히 어업부문에 있어 상호경쟁은 상호 공멸(共滅)의 길이라는 것이 세계 어업자원관리의 역사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삼국 정부당국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일본에 의해 제기된 200해리 경제수역문제는 일방에 의한 것이 아닌, 상호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

다. 즉 200해리 경제수역이 선포되더라도 상호 수역에 대한 입어문제, 어업자원관리문제 등 당사국 간에는 여전히 협력적 상황이 요구되는 것이다. 각국에 대한 어종 선호도가 달라 어획대상의 관심도도 달라질 수 있고, 업종간의 조업효율성도 다르기 때문에 상호 협력적 자세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왕에 200해리 체제가 된다면 한중일 삼국이 동시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일본이 먼저 200해리 체제를 선포하고 우리가 그 대응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선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역사가 그러하지만, 우리 나라 주변의 어업관계사에서 힘의 논리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향후 어업협상 등에 임하는 자세를 수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인 것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일환이 중국에 대한 200해리 선포이며, 이는 한중간의 어업협정을 조기타결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 된다. ㉠